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경 찰 공 무 원 승 진 임 용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을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2024. 11. 00. ~ 2025. 1. 00.)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삭 제>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⑦ · ⑧ (생 략)	3. ----- ----- ----- ----- 대상 자녀별로 ----- ----- ⑦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